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연 월 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('26. 3. 12.) 및 공포('26. 3. 31.)에 따라,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의 범위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
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벌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(안 제5조제4항)

- 「지방자치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어 시·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함

나. 밀원수의 범위(안 제48조의6 신설)

-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의 목본 밀원식물 25종과 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「밀원 식물의 범위」의 15종, 총 40종을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적용하는 밀원수의 범위로 함

다.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신청 등(안 제48조의7 신설)

- 지정신청 시 신청서, 위치도, 지적도·임야도, 산림경영계획인가서,

지정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,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
등록표 등본·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출을 간소화 함

○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발급 서식을 규정하고, 재발급 사유와 재
발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하며, 지정 세부절차, 지정 후 관리 및 그
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

○ 지정 신청서, 지정 동의서, 지정서, 재발급신청서 등을 서식으로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6(밀원수의 범위)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“밀원수(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)”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목본식물을 말한다.

제48조의7(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신청 등) ① 영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 산림의 위치도
2. 밀원수 특화단지의 경계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

도나 임야도

3.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(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)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(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)
 4. 별지 제39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
 5. 영 제44조의2제1항 별표 2의5의 “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” 중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영 제44조의2제3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”란 별지 제40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말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: 지정서 원본(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)
 2.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: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세부절차, 지정 후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, 별지 제39호서식,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밀원수 특화단지 [] 지정
[] 재지정 신청서

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개월			
신청인	산림소유자 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		
	주소(도로명)		전화번호				
산림 소재지 (지번)							
면적				수종 구성		동의율	
산림구분	신청면적	밀원수 조성면적	밀원수 조성비율	단일특화 수종명	단일특화 수종면적		단일특화 수종비율
[] 국유림 [] 공유림 [] 사유림	m ²	m ²	%		m ²	%	%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7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(재지정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·지방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청 산림의 위치도 2. 밀원수 특화단지의 경계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나 임야도 3.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(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) 또는 산림경영 계획변경인가서(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) 4. 별지 제39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 5. 영 제44조의제1항 별표 5의5의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중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2.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(신고인)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	→	심사계획 수립	→	심사	→	결 재	→	지정 통보
처리기관 : 산림청, 지방자치단체의 장										

제 호

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

1. 소재지:
2. 특화수종:
3. 지정면적:
4. 산림소유자 성명(대표자):
5. 지정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·지방산림청장

직인

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

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산림소유자 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(도로명)	전화번호	
산림 소재지 (지번)			
신청사유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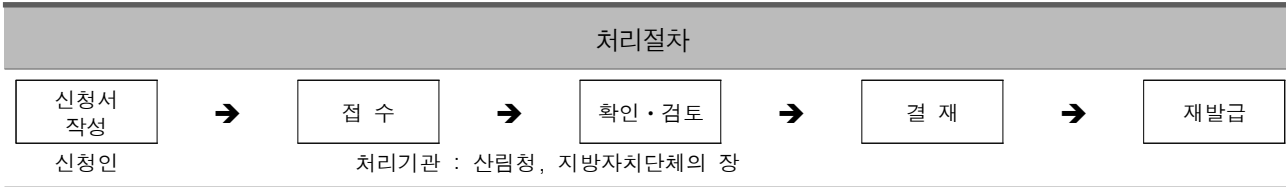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8조의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·지방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: 지정서 원본(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: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) ① ~ ③ (생략)	제5조(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 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 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 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 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 며,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	④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 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·특별자치도지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48조의6(밀원수의 범위) 법 제3 7조의2제1항에서 “밀원수(「양 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 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)”란 「양봉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목 본식물을 말한다.
<신설>	제48조의7(밀원수 특화단지의 지

정신청 등) ① 영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 산림의 위치도
2. 밀원수 특화단지의 경계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나 임야도
3.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(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)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(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)
4. 별지 제39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
5. 영 제44조의2제1항 별표 2의 5의 “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” 중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44조의2제3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”란 별지 제40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말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: 지정서 원본(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)
 2.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: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세부절차, 지정 후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